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 7. 14 선고 2021나1515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 7. 14 선고 2021나1515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가합5202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흥인

담당변호사 나승이

변론 종결 2022. 6. 9.

판결 선고 2022. 7. 14.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가합5202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B(C생)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별지2 채권 목록 가항 기재 채권에 관한 2018. 4. 20.자 양도계약 및 별지1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별지2 채권 목록 나항 기재 채권에 관한 2018. 4. 20.자 양도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대한민국이 2020. 4.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년 금제458호로 공탁한 46,922,5851)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채권 및 같은 법원 2020년 금제459호로 공탁한 108,661,819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채권을 제1항 기재 B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각 공탁금출급청구채권을 위 B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B(C생)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별지2 채권 목록 가항 기재 채권에 관한 2018. 4. 20.자 양도계약은 108,645,065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별지1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별지2 채권 목록 나항 기재 채권에 관한 2018. 4. 20.자 양도계약은 46,915,338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3 채권 목록 기재 각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1행부터 제4면 제1행까지의 "(이하 '이 사건 제2채권'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제2채권'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채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4행부터 제8면 제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B의 무자력 여부

1) 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

이 사건 각 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진 2018. 4. 20. 당시 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내역 및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각 회사를 지칭할 때 편의상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1	별지2 채권 목록 가항 기재 채권	185,738,785
2	별지2 채권 목록 나항 기재 채권	107,257,500
3	H 증권계좌의 유가증권 및 예수금	740,274,629
4	I은행에 대한 J예금(정기예금) 채권	150,000,000
5	K은행 예금채권	20,000,000
6	기업은행 예금채권	130,000,000
적극재산 합계	1,333,270,914	

7	L카드 대출금채무	4,656,000
8	M카드 대출금채무	12,833,000
9	M은행 대출금채무	35,000,000
10	N카드 대출금채무	2,000,000
11	○은행 대출금채무	7,083,000
12	P카드 대출금채무	5,900,000
13	L카드 대출금채무	1,190,000
14	Q캐피탈 보증금채무	27,899,000
15	H 단기성대출채무	233,170,000
16	H 장기성대출채무	372,926,906
17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305,182,000
18	U캐피탈 채무	14,894,000
소극재산 합계	1,022,733,906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15, 17, 18호증, 을 제5, 6,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T에 대한 신용정보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순번 3번 항목에 관하여 원고는, B의 적극재산 산정 시 H 계좌 관련 유가증권의 가액을 유가증권의 종목별 순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한 유가증권의 종목별 순평가금액은 유가증권의 종목별 평가금액(= 잔고수량 × 기준가)에서 장기성 대출금액(주식담보대출금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H에 대한 장기성 대출금채무가 소극재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종목별 순평가금액이 아닌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종목별 유가증권의 가액을 B의 적극재산에 반영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순번 6번 항목에 관하여, B의 기업은행에 대한 130,000,000원의 예금채권은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9,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가 2018. 4. 20. 당시 기업은행에 대하여 130,000,000원의 예금채권(계좌번호 1 생략)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순번 제15, 16번 항목에 관하여 원고는, B의 소극재산 중 H에 대한 단기성 대출금액이 293,290,000원이고, 장기성 대출금액이 397,642,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법원의 B에 대한 신용정보회신 결과에 기재된 B의 H에 대한 각 대출금액은 그 변동일자가 각 2018. 4. 16. 및 2018. 4. 18.인 반면, B의 잔고보고서(을 제6호증)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일인 2018. 4. 20. 기준으로 단기성 대출금액과 장기성 대출금액을 평가하였는바, B의 잔고보고서(을 제6호증) 기재에 따라 단기성 대출금채무의 가액을 233,170,000원으로, 장기성 대출금채무의 가액을 372,926,906원으로 각 반영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한편 원고는 B의 U캐피탈에 대한 14,894,000원의 채무(순번 18번)가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5의 기재 및 제1심법원의 T에 대한 신용정보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의 U캐피탈에 대한 14,894,000원의 채무가 2017. 7. 25. 발생한

사실, U캐피탈은 2018. 12. 14. 다른 금융기관(V로 보인다)에 위 채무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가 이 사건 각 채권을 양도한 2018. 4. 20. 당시 U캐피탈에 대해 14,894,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U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하기로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마) 또한 원고는 제1심법원의 T에 대한 신용정보회신 결과에 따라 ① R에 대한 500,000,000원의 보증채무, ② M은행에 대한 69,818,000원의 채무도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는 2018. 3. 16. 소외 회사와 R 사이의 S에 대한 외상물품 대금 지급보증계약(보증기간 2018. 1. 4.부터 2019. 1. 3.까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R에 대한 구상채무를 보증하였으나, 2019. 1. 3.까지 소외 회사의 구상채무가 발생하지 않은 점, ② B의 M은행에 대한 69,818,000원의 채무는 이 사건 각 채권 양도일 이후인 2018. 12. 27.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가 이 사건 각 채권 양도일 당시 위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각 채권 양도 당시 B의 적극재산은 1,333,270,914원, 그 소극재산은 1,022,733,906원으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310,537,008원(= 1,333,270,914원 - 1,022,733,906원) 초과하는바, B가 185,738,785원 상당의 별지1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별지2 목록 가항 기재 채권 및 107,257,500원 상당의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별지2 목록 나항 기재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후에도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한다. 따라서 B가 이 사건 각 채권 양도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순영

판사김범진

판사이강은

별지

1) 원고의 2020. 11.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46,922,858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46,922,585원'의 오타이다.